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23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7. 7.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제안이유

- 옥천전문대학 설치에 따른 정원책정을 하기 위함

주요골자

<정원조정 : 총 50명증> 2,718명 ⇒ 2,768명

- 본청 : 978명 ⇒ 957명 (감 21명)
- 직속기관 : 1,150명 ⇒ 1,222명 (증 72명)
- 사업소 : 293명 ⇒ 292명 (감 1명)

<정원증감내역>

- 옥천전문대학 78명 배치
 - 교원 50명 (순증)
 - 사무직원 28명 (자체조정)

근거법령

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1조
의2 및 제21조

따로붙임

-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(안) 1부
-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(정원의 총수) 제1호,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본 청 : 957명
3. 직속기관 : 1,222명
4. 사업소 : 292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